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35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 (시행일)</b> 이 계약서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b>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b>제3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b>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1월9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제1조~35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 (시행일)</b>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p> <p><b>제2조 (경과조치)</b> <u>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합니다. 단, 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수수료 할인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접수 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u></p> <p><b>제3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b>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② 제1항은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b>제4조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b>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1월9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p>	<p>개정법률 반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 2)</p>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p>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12.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2020년7월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 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 2호, 3호, 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운용관리수수료 면제에서</p>	<p>동 호의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u>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의 할인을 적용합니다. 동 호의 할인은 제11호의 할인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할인을 적용합니다.</u></p> <p><u>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기업형태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u></p> <p><u>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본 호의 할인을 적용합니다.</u></p> <p><u>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본 호의 할인을 적용합니다.</u></p> <p>13. 제1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2020년7월31일까지 한화투자증권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최초계약 체결일(계약응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되는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1호, 2호, 3호, 3의2호에 따른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운용관리수수료 면제에서</p>	<p>개정법률 반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2)</p>
--	--	---

<p>제외합니다.</p> <p>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따릅니다.</p> <p><b>제4조~5조(생략)</b></p>	<p>제외합니다.</p> <p>② 제2조 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따릅니다.</p> <p><b>제4조~5조(생략)</b></p>	
--	--	--